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양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69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충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중점방역관리지구 사육제한에 따른 도축장·부화장 보상대상 확대 ..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6. 5.

3. 회 부 일 : 2025. 6.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보상금은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한 농가만 받을 수 있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과 부화장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도축장의 소유자와 부화장의 소유자를 명시함으로써 도축장과 부

화장 소유자에게도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1호).

Ⅲ. 검토의견

1. 중점방역관리지구 사육제한에 따른 도축장·부화장 보상대상 확대

개정안은 중점방역관리지구¹⁾ 내에서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도축장(屠畜場) 및 부화장(孵化場) 소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명시함으로써,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 ----- ----- -----.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1. ----- ----- -----자(도축장의 소유자 및 부화장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 가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② 가금 사육 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③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²⁾하고 있음.

이에 따라는 사육제한 명령으로 사육을 못하는 육용오리 농가와 해당 육용오리 농가에 종란을 공급하지 못하는 종오리 농가와 같이 직접적인 사육주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지만³⁾,

해당 지역의 도축장, 부화장, 사료회사, 가축운송업자, 동물약품업체 등 연관 산업시설의 간접피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생산·사육·가공·유통이 긴밀히 연계된 현실을 고려할 때, 생산단계에서의 제한은 해당 지역 내 도축·부화 기능의 위축으로 직결되어 관련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⁴⁾

2)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 5. (생략)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② ~ ④ (생략)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⑥ ~ ⑦ (생략)

3) [사육제한 추진 내역]

구분	'19/'20	'20/'21	'21/'22	'22/'23	'23/'24
시기	11~2월	11~2월	11~2월	11~2월	11~2월
사육제한	207호 300만수	213호 300만수	193호 300만수	177호 290만수	164호 290만수
보상단가	873원/마리 600원/개	815원/마리 469원/개	782원/마리 472원/개	845원/마리 702원/개	937원/마리 940원/개
국비지원	34억원	47억원	37억원	46억원	54억원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축장 소유자 및 부화장 소유자도 사육제한 명령의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사육제한에 따른 연쇄 피해를 입은 연관 산업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도축장과 부화장을 사육제한 보상 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는 산업의 현실적 여건과 제도의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사육제한의 보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육제한과 연관 산업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절기 사육제한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과 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도축장·부화장 등 연관 산업에 손실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살처분 규모가 감소하고 연도별 오리고기 생산량에도 큰 변동이 없었던 점에서 일정한 효과가 확인⁵⁾되었으며, 사육제한이 없을 경우 더 큰 영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4)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 농가 전방위 피해 심각, 한국농업신문, 2024.01.30.

5) <연도별 오리고기 생산량 및 살처분 현황>

아울러 도축장·부화장에 대한 보상은 산업구조의 특수성과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출하·입식 허용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25

■ 연도별 오리고기 생산량 : 사육제한 시행 이후 연간 오리고기 생산량 변화가 없음

구 분	단위	'10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생산량	톤	127,834	125,769	126,458	81,597	159,243	164,301	158,049	116,302	106,422	110,924	124,811

■ 연도별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두수 현황

기 간	'08	'10/'11	'14/'15	'16/'17	'17/'18	'20/'21	'21/'22*	'22/'23*	'23/'24	'24/'25
발생건수(호수)	98	91	391	421	22	109	47	75	32	47
살처분(두수)	1,020만	647만	2,477만	3,808만	654만	2,993만	730만	660만	365만	668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사육제한 제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동·리 단위) 중 같은 법 제1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고위험지역, 동·리 단위)을 선정하고, 고위험지역에 소재하는 일부 육용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동절기(11월~2월, 4개월) 사육을 제한(시·군에서 명령)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

□ 보상금 지급 방법 및 대상

- 보상금 지급 방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 보상금 지원 대상 : 육용오리 사육농가(사육제한 보상), 계열화사업자(종란폐기 비용 보상), 비계열 새끼오리 공급농가(종란폐기 비용 보상)

□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 가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 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 ② 가금 사육 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 ③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 (고위험지역 기준, 가전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 ① 최근 5년간 반경 3km 이내 농가에서 HPAI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 ② 최근 5년간 야생조류 HPAI 검출 지점의 반경 10km 이내 지역 중 최근 5년간 발생 농가가 있는 지역,
- ③ 가금 사육 농가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이거나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 사업개요

- (현황) '17/'18년부터 휴업보상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23/'24년부터 사육제한 명령제*로 전환·추진
 - * 가전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일부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23.6월)
- (사업대상)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위험지역* 소재 오리 사육 농가
 - * 고병원성 AI 반복발생지역,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지역, 가금농가 밀집지역 등
- (사업규모) 육용오리 127호 228만 마리
- (사업기간) '24.11월 ~ '25.2월(4개월), 필요시 연장
- (소요예산) 4,482백만원*(국비기준)
- (보상단가) 오리 마리당 1,048원*('23/'24년 937원), 종란 개당 918원**('23/'24년 940원)
 - * 마리당 평균 순수익 1,048원 = 1,497원('22.8월~'24.7월, 2년 평균 위탁수수료) - 449원(농가 평균 소요비용 : 난방·급수비용 + 깔집비용 + 기타 잡비)
 - ** 종란 폐기비 918원/개 = 1,836원('22.8월~'24.7월, 2년 평균 병아리가격) × 50%

□ 사업 추진 절차

- 고위험지역 선정(대상농가 추출*, 9월) → 합동 현장 점검(지자체·검역본부, 10월) → 대상농가 확정(10.29.) → 사육제한 추진(11~2월)

□ 사육제한 지역 및 사업량(마리수 및 농가수) 비교 ('23/'24 對 '24/'25)

구 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합 계
'24/'25년	300/23	74/5	614/32	1,198/59	94/8	2,280천수/127호
증감률 (마리수 기준)	(△18.5%)	(+29.8%)	(△22.5%)	(△24.2%)	(△8.7%)	(△21.4%)
'23/'24년	368/25	57/4	792/39	1,580/89	103/7	2,900천수/164호

참고 1

오리 사육부터 유통까지 흐름도

